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9637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외 5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외 2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재나1001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심청구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나.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22나21744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2023. 1.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23. 2. 1.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재심청구

피고는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 구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3. 1. 1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2카기112). 피고는 헌법재판소에 구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바43), 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위 2020헌가4 사건에 병합되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자, 재심대상판결에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대상이 되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는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도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이 구법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므로,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

재심대상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재심대상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재심대상사건에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전부의 계속 적용을 명하

였음을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재심청구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엄상필